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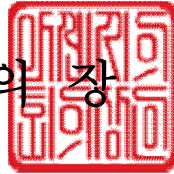
아산시의회 공고 제2024-5호

아산시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및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조례안 예고) 규정에 따라 아산시의회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4년 4월 23일

아 산 시 의 회 의 장



1. 조례안 목록

조례안	발의의원	비고
아산시 특별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철호 의원	
아산시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맹의석 의원	
아산시 가스타이머족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효진 의원	
아산시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미성 의원	
아산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김미성 의원	
아산시 홀로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미성 의원	
아산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김은아 의원	
아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효진 의원	
아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기에 의원	
아산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안	신미진 의원	

※ 조례안 : 따로붙임 참조

2. 의견제출

○ 이 조례 제·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의견 제출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불임의 의견서를 아산시의회의장(참조: 의회사무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기한 : 2024년 4월 28일(일)까지

나. 의견 제출방법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등
- 3) 서면, 우편, 전자우편(asansicouncil@korea.kr), 팩스(041-540-2135)로 제출
- 4) 의견 제출할 곳 : (우)31512/충청남도 아산시 시민로 456(온천동)

아산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사팀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산시의회 의회사무국(☎ 041-540-2905, 2628, 2705, 27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임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붙임]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견	비고